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이하인 세대중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나. 예산지원(안 제4조)

-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지원대상 선정(안 제5조)

-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결정

라. 지원방법(안 제6조)

- 지원방법은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납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1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당초예산 반영.

다. 입법예고 : 2007. 8.17 - 9.16(20일간) - 의견없음

라. 참고자료 : 별첨2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
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만, 만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제2조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별첨2」

참 고 자 료

1. 연간지원 예상액 : 48,540천원(군비)

- 대상자 : 799세대
- 월보험료 : 4,045천원

2. 국민건강보험료 월1만원이하 납부세대 현황

(단위:세대, 천원)

| 구분 | 계 | | 65세이상 노인 | | 장애인 세대 | | 기 타 | |
|--------------|-------|--------|----------|-------|--------|-------|-----|-------|
| | 세 대 | 보 험 료 | 세 대 | 보 험 료 | 세 대 | 보 험 료 | 세 대 | 보 험 료 |
| 계 | 1,792 | 10,771 | 799 | 4,045 | 144 | 784 | 849 | 5,942 |
| 0~5,000 | 765 | 2,422 | 536 | 1,980 | 52 | 179 | 177 | 263 |
| 5000~8,000 | 443 | 2,933 | 146 | 1,008 | 69 | 396 | 228 | 1,529 |
| 8,000~10,000 | 584 | 5,146 | 117 | 1,057 | 23 | 209 | 444 | 4,150 |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전체노인인구의 10.5%

3. 지원대상자 재산상황(국민건강보험료 월1만원이하)

- 자식이 있으나 실질소득이 없는 노인세대
-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

4. 강원도내 대비표

《시행10개, 준비중 3개, 미시행 5개》

| 시군별 | 시행여부 | 시군별 | 시행여부 | 비 고 |
|-----|-------|-----|-------|-----|
| 춘천 | 시행 | 영월 | 시행 | |
| 원주 | 시행 | 평창 | 미시행 | |
| 강릉 | 시행 | 정선 | 시행 | |
| 동해 | 조례제정중 | 철원 | 조례제정중 | |
| 태백 | 시행 | 화천 | 조례제정중 | |
| 속초 | 미시행 | 양구 | 시행 | |
| 삼척 | 시행 | 인제 | 시행 | |
| 홍천 | 미시행 | 고성 | 미시행 | |
| 횡성 | 미시행 | 양양 | 시행 | |